

아베 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논리의 비판적 고찰

- 「안보법제간담회」 논의를 중심으로 -

강 경 자*

(e-mail: keiko84@daum.net)

【Abstract】

The Abe Cabinet's approval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is a very sensitive issue in Northeast Asia, characterized by high military tensions, the Asia's Paradox, and the security dilemma. This paper reviewed the reports of the first and second discussions on Reconstruction of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which played a key role in entitling Japan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nd criticized the Abe Cabinet's justifications for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It criticized the Abe cabinet's perception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as a deterrent to war and thus reduction in arms race, pointed to their distortion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and revealed their distorted perspectives of history.

It is not desirable to tolerate Japan's exercise of collective self-defense rights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Korea.

The governments and societies should give voice to peace-building based on universal values such as peace with human rights.

key words : Abe Cabinet,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rms race,
right to live in peace, revised view of history

* 고려대 중일어문학과 박사 수료 연구생.

I. 서론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¹⁾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하고 이 각의 결정에 따라 국내 안보법제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전 지구적 영역에서 미군과 함께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년 7월 16일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후 9월 19일 참의원에서 안보법안 확정을 강행하였다.

일본 평화 헌법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전후 헌법 논의 중 가장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²⁾ 그간 일본 내각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행 평화헌법 하에서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여태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깨고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하고 구체적인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행보는 미국의 오랜 요구에 따르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이루지 못한 헌법 개정을 향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³⁾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내각의 거침없는 안보 정책의 전환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만큼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하여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미군을 돕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시나리오 등을 고려 할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과정의 논의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할 때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논의 고찰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아베 총리의 답변 “현재로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은 종래대로이지만 현재 「안보법제간담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담회 보고서가 제출되면 재검토해 나갈 생각이다.”⁵⁾라고 밝힌 점, 2014년의 각의 결정 및 2015년의 『방위백서』에서

1)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이란 국제법상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豊下栖彦(2007)『集團的自衛權とは何か』岩波書店, p.5.)

2) 山田邦夫(2006) 「自衛權の論点 『憲法の論点シリーズ⑫』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p.2.

3) 半田滋(2014) 『日本は戦争をするのか : 集團的自衛權と自衛隊』 岩波書店, p.129

4) 奥平康弘, 山口二郎 編(2014) 『集團的自衛權の何が問題か: 解釈改憲批判』 岩波書店, p.130.

5) 第186回国会答弁書 答弁書第六七号 2014.04.18.

집단적 자위권 허용 방침의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 간담회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는 이 간담회의 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논리를 간담회 보고서 내용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⁶⁾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1, 2차 간담회 보고서 내용을 기본 1차 자료로 하여 간담회 보고서와 국회회의록과 헌법 문답서 및 국회 기자회견문 등의 텍스트를 통해 아베 내각의 안보정책에 관한 인식과 논리를 비판적 안목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이르기까지의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1. 안보법제간담회 개최 경위와 1차 보고서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공식적인 첫 발언은 2006년 9월29일 국회 총리 취임연설에서 나타난다. 아베는 취임연설에서 “미일동맹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경우가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예에 따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⁷⁾ 고 소신을 밝혔다. 이로써 아베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기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 및 해석을 재고

6) 국내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외 법적인 근거들에 기초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의 형성과정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조망하고 있는 법적 차원에서의 연구로서 이명찬(2013) 「집단적 자위권이란?」, 유형석(2006)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 배경에 관한 소고」, 백좌흠(2001)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등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로는 최운도(201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 개정」, 조세영(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상주의적 발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하기보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현실주의적인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허진녕(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추진은 미일동맹강화로 귀결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관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7) 平成18年(2006)9月29日 「安倍内閣総理大臣の所信についての演説」 第165回国会第3号.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자위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총리에 의해서 이었다. 요시다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이상 자위권은 존재 하지만 그것은 “무력에 의하지 않는 자위권”이라고 하였다.⁸⁾ 당시의 자위권의 논의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개별적 자위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 제약 아래 인정되는 일본의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무력에 의하지 않는 자위권”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 그 후 이러한 개별적 자위권 논의에서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4년 이었다. 당시 외무성의 시모다 타케소우(下田武三) 조약 국장은 중의원 외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상호방위를 규정하는 공동방위조약은 헌법 제9조 제2항 때문에 체결 할 수 없다.” 고 하였다.⁹⁾ 이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해외 파병은 헌법 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¹⁰⁾

그런데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당시 5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과 방침을 재고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2007년 5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보법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설치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본격화 된다. 간담회의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시대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을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유형에 맞추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포함한 헌법과의 관계정리 및 연구를 위해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¹¹⁾ 즉 간담회 설립취지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작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간담회 구성원들의 성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간담회 구성원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장해 온 학자들로서 헌법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¹²⁾

간담회는 2007년 5월 18일부터 1차 보고서가 제출되는 2008년 6월 24일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에 걸쳐 6차례 이루어졌다. 2007년 5월 첫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아베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응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문제를 4가지 유형으로 제기 하였다.¹³⁾ 아베가 제기한 4가지 유형의 문제

8) 浅野善治 外 編集(2003)『憲法答弁集(1947-1999)』信山社, pp.83-84.

9) 第19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會議録第57号 昭29(1954) 6. 3. (下田武三 外務省条約局長)

10) 浅野善治 外 編集(2003)『憲法答弁集(1947-1999)』信山社, pp.85-86.

11)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08年6月24日) p.33.

12) 半田滋(2014)『日本は戦争をするのか：集团的自衛権と自衛隊』岩波書店, pp.59-60.

13) 4가지 유형의 문제: ① 공동훈련 등으로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의 함선이 미군의 함선과 가까이에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 미군함이 공격받아도 일본 자위대의 함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해도 되겠는가? ② 미국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탄도 미사일이 레이더로 포착된 경우에 일본이 요격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되겠는가? ③ 국제평화활동에 있어서 같은 PKO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타국의 부대 또는 대원이

를 요약해보면 ① 공해에서의 미국 군함의 보호 ② 미국으로 향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③ 국제평화활동에 있어서의 무기 사용 ④ 유엔 PKO 등에 참가하고 있는 타국의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이다. 이에 간담회는 4가지 유형의 문제를 매회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인 1차 보고서를 2008년 6월 24일 제출하게 된다.¹⁴⁾

1차 보고서는 크게 서론 본문 요약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과 법적 기반 재구축의 필요성, 제2부 4유형의 문제에 관한 간담회의 의견, 제3부 헌법 제 9조에 관련된 간담회의 기본 인식, 제4부 4유형의 안보 문제 및 관련 사항에 관한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의 제1부와 2부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21세기 안전보장의 환경이 종래의 안전보장에 관한 헌법 해석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과 헌법 해석 변경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4가지 유형의 각 문제에 관한 간담회의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① 4유형에 관한 의견과 그 전제 ② 헌법 제9조의 해석 ③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유엔 집단안전보장 참여 ④ 자위권의 발동 요건 ⑤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와 행사 및 국제 분쟁의 개념.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자세하게 헌법 해석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요건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⑥에서는 제3부의 개괄을 통해 요약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 마지막 부분인 제4부에서는 ① 4유형에 관한 제언 ②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에 부과해야 할 제약 ③ 새로운 안전보장정책 구축 방법 ④ 결어의 순으로 4가지 문제 유형에 관한 제언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과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도출한 것이 1차 보고서의 그 핵심이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동맹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1차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결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일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때에 미군함에 위협이 미쳤을 경우 이를 방호할 수

공격을 받은 경우에 그 부대 또는 대원을 구원하기 위해 해당 위치까지 달려가서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동료를 돕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본의 요원만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도 되겠는가? ④ 같은 PKO 등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 지원”의 문제에 있어 “무력행사와 일체화”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과되어있다. 현행대로의 “후방 지원” 방식은 괜찮은 것인가?

14) 제2회 2007년 6월 11일 「米軍の艦船が公海上で攻撃された場合の我が国自衛隊の艦船の対応」 제 3 회 2007년 6월 29일 「我が国の同盟国である米国に向かうかもしれない弾道ミサイルをレーダーで捕捉した場合の自衛隊の対応」 제4회 2007년 8월 10일 「国際的な平和活動における武器使用」 제5회 2007년 8월 30일 「国際的な平和活動におけるいわゆる『後方支援』」 최종의견교환회 2008년 4월 11일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平成20年6月24日) 제출.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은 동맹국 상호 신뢰 관계의 유지·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격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반인 미일 동맹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이처럼 1차 보고서는 “동맹국 상호 신뢰 관계의 유지·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일관계를 위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즉 현행 헌법 해석으로는 여러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 해석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아베 내각은 1차 보고서 내용에 기초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7년 7월 29일 참의원선거에서 참패 함으로 1차 아베 내각은 2008년 9월 끝나게 되고 이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논의도 2014년 간담회가 재개될 때까지 잠잠하게 된다.

2. 2차 간담회 개최경위 및 보고서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내각이 시작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는 재부상하게 된다. 아베는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체제 강화의지를 표명하고 간담회를 재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논의 추진의지를 밝혔다.¹⁶⁾ 그리고 2013년 2월 8일 5년 만에 간담회를 재개하였다. 아베는 이 간담회를 재개하면서 1차 보고서의 4가지 유형 문제에 더하여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헌법해석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 및 헌법해석의 내용, 국내 법제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2차 간담회는 1차 보고서의 4가지 유형의 문제에 더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추가하여 어떻게 하면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된다. 간담회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2014년 5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2014년 5월 15일에 제출된 2차 보고서¹⁷⁾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는 크게 서론·본론·결론 및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본론은 Ⅲ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I.헌법해석

15) 1차보고서, p.22.

16) 2012년12월26日 安倍内閣総理大臣就任記者会見에서“集团的自衛権の行使、解釈の変更に ついてであります、さきの安倍政権において、安保法制懇の結果が、報告は福田政権において官房長官に対してなされたわけであり、あの類型でい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もう一度あの報告を安倍政権において、あのときの有識者から何うことによって、また検討を始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라고 하면서 간담회 재개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검토를 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17)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14年 5月15日).

의 현상과 문제점 II. 있어야 할 헌법 해석 III. 국내 법제 본연의 자세이다. I부에서는 기존 정부의 헌법해석을 개관한 후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헌법해석과 법제도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사례를 들고 있다. II부에서는 총 8개의 항목 -① 헌법 제 9조 제 1 항 및 제 2 항 ② 헌법 상 인정되는 자위권 ③ 군사적 조치를 동반하는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참여 ④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론 ⑤ 유엔 PKO 등에의 협력과 무기사용 ⑥ 재외 국민의 보호·구출 ⑦ 국제 치안 협력 ⑧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침해에 대한 대응-에 걸쳐 어떤 새로운 헌법 해석이 가능한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III부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제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지를 제언하고 있다.

2차 보고서 내용의 전반적 특징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 자위권에 더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또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조치 등에 대한 일본의 참가도 정부가 적절한 형태의 새로운 해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¹⁸⁾

이는 종래의 헌법해석 “일본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제외한 모든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새로운 해석” 즉 헌법해석 변경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이를 위한 구체적 안보법제 정비를 제언하고 있다.

III. 1 , 2차 보고서의 비교 분석

이상 1, 2차 간담회 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 2차 보고서의 공통적인 핵심적 내용은 헌법 해석변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다. 다만 2008년의 1차 보고서가 헌법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반해 2014년의 2차 보고서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합법적이며 이를 안보 법제 정비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1차 보고서에서는 “(간담회 논의에는)..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유엔의 집단안보 참여

18) 2차 보고서, p.38.

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변경이 포함되어 있다.”¹⁹⁾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심스럽게 헌법 해석변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2차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분명히 함에 따라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²⁰⁾고 함으로써 보다 과감하게 헌법해석 변경으로 충분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1,2차 보고서의 온도차는 평화 헌법 제9조²¹⁾ 해석에 대한 자세에서 보다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1차 보고서에서는 헌법 제9조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일 것이다.”라고 함으로 헌법 해석변경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다.²²⁾ 반면 2차 보고서에서는 평화헌법 제 9조 2항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의 헌법 해석은 “추상적인 법리만으로 형식적으로 선을 그은 점에서 적합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²³⁾라고 단언하고 있다. 즉 헌법 9조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1, 2차 보고서의 상이점으로는 중국 견제 의식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의 논리 및 평화적 생존권 논의, 헌법 9조의 성립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1차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억지력 강화의 논리가 2차 보고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억지력을 강화해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줄임으로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군비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억지력을 강화해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줄일 것이다. 또한 만일 한 국가가 개별적 자위권만으로 안전을 지키려하면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고, 대규모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은 전체적으로 군비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²⁴⁾

둘째로 1, 2차 간담회 보고서를 비교 분석 해볼 때 1차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19) 1차 보고서, p.29. 我が国によ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及び国連の集団安全保障への参加を認めるよう、憲法解憲法解釈を変更することが含まれている。

20) 2차 보고서, p.38 .政府が適切な形で新しい解釈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可能であり、憲法改正が必要だという指摘は当たらない。

21) 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22) 1차 보고서, p.19. 禁ずるものではないと読むのが素直な文理解釈であろう。

23) 2차 보고서, p.36. 集団的自衛権の行使も含まれると解すべきである。

24) 2차 보고서, p.20.

2차 보고서에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일본국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확인하고 제 13조에서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기본적 인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생존의 확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존립이 전제 조건이다...주권자인 국민의 생존, 국가의 존립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이와 같은 헌법의 관점에서도 없어야 한다.”²⁵⁾

한마디로 ‘평화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보고서에서만 볼 수 있는 문언으로서, 헌법 제9조의 기존 헌법해석의 배경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텍스트 속에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드러난다.

헌법 제9조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 즉 개별적 자위권밖에 인정하지 않는 여태까지의 정부 해석은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종전 직후의 시대 및 냉전 시대의 국제 관계, 그리고 그 시대의 일본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 해석은 특히 부족한 자원을 군사에 할애하지 않고 패전의 황폐함에서 필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했던 일본의 시대 배경을 잘 반영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급변한 국제 정세 및 일본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²⁶⁾

즉 헌법 제9조에 대한 기존의 정부 해석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 자위권만을 인정한 것은 전후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이 자원을 군비에 낭비하지 않고 경제재건에 힘쓰기 위해서 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헌법 해석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 2차 보고서에는 미묘한 온도차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1차보고서가 왜곡된 역사 인식하에서 조심스럽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포석을 깔았다면 2차 보고서에는 억지력 강화 논리와 평화적 생존권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면서 해석변경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1, 2차 보고서의 텍스트 속에서 알 수 있는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논리와 인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2차 보고서, p.9.

26) 1차 보고서, p.18.

IV.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논리 비판

1. 역지력 강화를 통한 군비경쟁 저하의 논리

2차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강력한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역지력 강화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줄이고 군비경쟁을 낮추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군비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를 강화하기 2차 보고서 곳곳에서 미일동맹이야말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 및 일본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일동맹 없이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그 안전을 완수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며 미일 양국과 관련국이 협력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안전보장의 모든 측면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필수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인 미일 동맹”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안보정책의 근간으로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미일동맹의 역할을 절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역지력 강화라는 논리의 핵심적 근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의식이다. 1차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²⁸⁾ 그러나 2차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협으로 상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시급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강력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중국에 맞서 미일동맹 및 군사력 강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분명하고, 공표된 국방비의 명목상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배이며 국방비의 높은 신장을 배경으로 현대 전투기와 신형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최신 무기도입과 양적확대가 현저하다. 중국의 국방비는 계속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지만, 2014년도 공식 발표된 예산액도 12조엔 이상이며, 일본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욱 막강한 중국군이 등장한다. 또한 영유권에 관한 독자적 주장에 근거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도 간파되고 있다.²⁹⁾

27) 이와 같은 관점은 2014년 『방위백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서에서는 “미일동맹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8) 1차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냉전 시대나 냉전 시대 직후와는 달리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 테러의 심각화로 안보상의 위협이 다양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있어 직접적이고 새로운 위협으로 출현했다”고 함으로써 일본의 위협으로 북한을 언급하고 있다.

29) 2차보고서, p.11.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아래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증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베 내각 안보정책의 기본적 관점이자 자세이다. 아베 내각은 2013년 12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강조하면서 미일동맹 강화와 자위대 증강이라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였다. 2014년 「방위백서」와 「신방위대장」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중국 견제의식에 기초한 미일동맹 및 군사력 강화 방침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2015년 4월에 개정된 미일협력지침 역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및 동북아 역내에서 미일의 주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견제의식에 기초한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정책이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군비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내각 하에서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해마다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감률은 1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이처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강화 정책은 현실정치 속에서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보다 동북아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안보 딜레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³¹⁾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강화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Pivot to Asia)은 “미군은 소련을 압도했던 것처럼 중국과 명시적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마틴 뎀시(Martine Dempsey) 미 합참 의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을 그 기저로 한다.³²⁾ 2013년 10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공동 성명에서도 중국에 대하여는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향상시켜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조치와 집단적 자위권 결의를 환영하였다.³³⁾ 또한 2014년판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30) 일본의 방위비는 2002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3년 2차 아베 내각 발족 후 해마다 방위비는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도에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한 것을 기점으로 2014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방위성은 2016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11억 엔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2% 증가한 규모로서 전후 사상 최초, 최대 액수이다. 또한 스톡홀름 평화문제 연구소(SIPRI)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감률은 170%에 달한다.

31) 樋口陽一, 山口二郎 編 (2015) 『安倍流改憲にNOを!』 岩波書店, pp.40-41.

32) Joseph GERSON(2012). “Countering Washington’s Pivot and the New Asia-Pacific Arms Race”, *Countering Maritime Militarization and Peace-building in East As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33) 공동서 내용 중에는 “미일동맹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결정했다. 더 강력한 동맹과 더 큰 책임의 공유를 위한 양국의 전략적 구상은 1997년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재검토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이를 초월한 지역의 안보 및 국방협력 확대 및 주일 미군의 재편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조치의 승인을 기초로 한

위협 의식 속에 아태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여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⁴⁾ 이처럼 미국은 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하고 미일동맹 강화 및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⁵⁾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중국의 역내 패권주의에 직접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감에 따라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패권에 힘을 실어주는 일본의 안보정책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냉전식 중국봉쇄정책은 역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Robert Ross)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중시정책이 중국의 불안감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중국의 공격성을 촉진하고 지역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³⁶⁾ 베이더(Jeffrey A. Bader)는 중국을 자극하여 역내 고전적인 안보딜레마가 생겨나지 않도록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³⁷⁾

중국 역시 중국 봉쇄의 일환 속에 추진되는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8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는 아태지역의 불안정성과 갈등의 대부분이 미국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양자 동맹 체제를 강화하여 냉전적 대결 구도를 되살림으로써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난하였다.³⁸⁾ 또한 중국은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최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중·러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등 중·러 관계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³⁹⁾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진핑 정권은 중·러 관계의 긴밀화를 피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결속을 강화하였는데 이 기구의 대미 견제적 반미 경향은 분명하다.⁴⁰⁾ 또한 2014년 5월 20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고 일본을 향해 전후 국제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러 양국의 행보는 미일 양국을 향한 견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미국은 또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일본의 결의를 환영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책임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국제적인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하게 확대하는 군사적 자원의 투입을 동반하는 군사상의 근대화에 대해 개방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계속 촉구 해 나간다.”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16027.pdf>.

3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P.4-16.

35) 정재홍(2012)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지역 안보질서 변화 고찰」 『군사논단』 Vol. 70, p.68.

36) Ross Robert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Foreign Affairs*, November, 91(6), pp.70-82.

37) Jeffrey A. Bader (2012) *Obama and China's Rise*.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38) 설인효 외 (2012) 「중국 국방백서 분석」 『신아세아』 19권 4호, pp.192-225.

39) 박한규(2014)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와 향후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1호, p. 137.

40) 김태운(2007) 「탈냉전기 중·러 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2호, p.70.

결국 일본의 중국봉쇄를 위한 미일안보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신냉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는 미일동맹을 기저로 하는 일본의 안보정책은 중국과 미·일의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군비 경쟁 및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강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억지력 강화가 군비 경쟁을 억제하여 군비 경쟁을 낮출 수 있다는 아베 내각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변용된 평화적 생존권론

1차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2차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위한 근거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평화적 생존권’이다. 2차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평화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평화적 생존권 규범의 인용은 아베의 2014년 4월 18일의 「국회질의 답변서」와 2014년 『방위백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래로부터 헌법 제9조의 문언은 일본이 국제관계에서 의 무력행사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 전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일본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헌법 제13조 취지를 감안하면 헌법 제9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⁴¹⁾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헌법 제13조의 취지를 감안하면 헌법 제9조가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⁴²⁾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논거로 제시된 아베 내각의 평화적 생존권 논의는 의도적으로 변용한 평화적 생존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평화적 생존권은 그 효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전(反戰) 반군사(反軍事)를 표방하며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주장해왔다. 평화적 생존권론의 효시인 호시노 야스사부로(星野安三郎)는 50년대부터 추진하게 된 재군비 정책과 안보조약 개정에 의한 미일동맹 강화와 군사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평화적 생존권을 자각하게 하였다.고 고 하였다.⁴³⁾ 즉 평화적 생존권은 이 규범의 출현부터 미일동맹에의 경사와 군사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2008년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에서 발표한 <평화적 생존권 및 일본국 헌법9조의 오늘날의 의의를 확인하는 선언(平和的生存権および日本国憲法9条の今日的

41) 第186回国会(常会)2014.04.18. 答弁書第六七号.

「参議院議員福島君提出集团的自衛権並びにその行使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47) 「憲法第9条のもとで許容される自衛の措置」 『防衛白書』(2014)

<http://www.mod.go.jp/j/publication/wp/wp2014/pc/2014/html/n2122000.html>

43) 星野安三郎(1962) 「平和的生存権序論」 『日本国憲法史考』 法律文化社, pp.5-10.

意義を確認する宣言)》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모든 기본적 인권보장의 기초가 되는 인권이며 전쟁이나 폭력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이라고 하였다.⁴⁴⁾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해석은 정부 차원의 논의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05년 참의원 헌법 조사회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은 전쟁과 군사력에 의해 자기의 생명과 생활을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징병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 .. 평화적 생존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는 국가의 이미지는 평화를 창조하는 평화 외교 · 예방 외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되며 비전(非戰)을 위한 NGO지원도 포함된다.”⁴⁵⁾고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평화적 생존권의 해석은 헌법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4월 18일 이라크파병위헌 소송에서의 나고야 고등법원의 판결은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규범적 내용 및 구체적 권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9조와 13조에 기초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기초”로서 “인권을 향유하게 하는 기저가 되는 권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로서 “헌법 9조에 위반하는 전쟁의 수행 등에서의 가담, 협력을 강요당하는 경우 위헌 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에 의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⁴⁶⁾ 즉 평화적 생존권의 핵심은 헌법 9조에 기초하여 전쟁수행 가담이나 협력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⁴⁷⁾

이처럼 평화적 생존권은 학문적으로나 시민 사회 담론으로서나 국회 결의나 헌법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볼 때 한결같이 9조의 전쟁 포기, 군비 포기 조항에 기초한 비군사적 평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주장,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규범이다.⁴⁸⁾ 결국 평화적 생존권의 핵심적 주장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비판과 함께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인 헌법 9조의 정신을 고양시킴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화적 생존권이 내포하고 있는 비군사적 인권 중심의 논의를 생각해 볼 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위한 평화적 생존권의 개념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평화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이 합당하다는 논리는 모순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平和的生存権および日本国憲法 9 条の今日的意義を確認する宣言」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civil_liberties/year/2008/2008_1.html

45) 「日本国憲法に関する調査報告書」(2005) 参議院憲法調査会 p.69.

46) 名古屋高等裁判所抗訴審 2008年4月17日.

現代憲法教育研究会編 (2010) 『憲法とそれぞれの人権』, 法律文化社, p.187

47) 小林武編(2009) 「今日における平和的生存権の意義と可能性」 『いま日本国憲法は』, 法律文化社, pp.122-127.

48) 元山健, 建石真公子 編 (2009) 『現代日本の憲法』 法律文化社, pp.147-148.

3. 수정주의 역사관

무엇보다도 간담회 보고서에 나타난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논리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9조는 전범국 일본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에 엄청난 참화를 준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교훈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즉 헌법 제 9조의 핵심적 배경은 전범국 일본의 참회와 약속인 것이다. 아시아 제국에 막대한 희생을 초래한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군사력 포기에 대한 약속이 헌법 9조의 성립과 해석의 배경의 핵심적 부분인 것이다.⁴⁹⁾ 따라서 평화헌법 9조는 일본 국내의 헌법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짓밟았던 국가들을 향한 서약으로서 국제적 선언의 의미가 큰 특수한 성격의 헌법 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과 서약은 정부 차원의 서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95년 6월 9일 중의원 회의에서는 전후 50주년을 맞아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안(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案)”을 결의 하였다. 이 결의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행한 행위 및 기타 국가 특히 아시아 나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현” 하고 “일본국 헌법이 정한 항구평화의 이념 아래 세계 국가들과 함께 인류 공생의 미래를 여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⁵⁰⁾

또한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함과 동시에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거에 대한 “속죄의 길”이라고 하고 있다. 이후 무라야마 담화는 역대 총리에 의해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에 의해 발표된 “고이즈미 담화”는 전후 60주년의 종전기념일에 내각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사죄하였다.⁵¹⁾ 2010년 8월 10일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총리가 발표한 “간 담화” 역시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 하고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및 평화에 대한 약속이 주된 내용이자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9조의 배경과 해석의 있어서 일본이 전범국으로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약속이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1차 보고서에 나타나는 아베 내각의 9조의 배경 해석에는 반성과 사죄 및

49) 水島朝穂 (2015) 『徹底分析! 集団的自衛権』 岩波書店, p.36.

50) 第132回 国会(本会議) 第35号.(1995.06.09)

51) 「小泉内閣総理大臣談話」

<http://www.kantei.go.jp/jp/koizumispeech/2005/08/15danwa.html>

부전의 약속은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일본의 재건을 위해 자원을 군비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 헌법 제9조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9조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전전(戰前)의 국가로의 회귀 선언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역사 인식이다.⁵²⁾

이와 같은 아베의 역사인식 문제는 타국을 침략한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⁵³⁾ 아베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가간의 관계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발언함으로써 침략을 부정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⁵⁴⁾ 이러한 아베의 역사 인식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5월 1일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완고한 국수주의자인 아베 총리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아시아의 희생을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에 가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영준도 아베의 역사인식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부정하는 신자주국가론의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하였다.⁵⁵⁾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역시 아베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초한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비판하였다.⁵⁶⁾

이러한 아베의 역사 인식은 2015년 4월 29일 미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나타났다. 아시아 제국에 대한 ‘깊은 반성(deep remorse)’을 표명하면서도 ‘식민지배’, ‘침략’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our actions)’이라고만 하였다.⁵⁷⁾ 또한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된 “아베 담화”는 원칙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여 식민지 지배,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누구의 누구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인지, 무엇 때문에 사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아시아 침략 역사에 대한 깊은 사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배경에는 9조의 성립 배경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 및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있다.⁵⁸⁾ 아베는 이러한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기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무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이다.

52) 浦部法穂(2014) 「日本国憲法 「平和主義」 の歴史的意味」 『浦部法穂の憲法時評』 法学館憲法研究所.

53) 保阪正康(2015) 『安倍首相の歴史観を問う』 講談社, pp.17-18

54) 도시환(2013) 「아베총리의 침략부정과 식민지 책임」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p.146.

55) 박영준(2013) 「아베정권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정세」 『정세와정책』 4월호, p.13.

56) 渡辺治 外(2014)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 大月書店, pp.155-156.

57) “Toward an Alliance of Hope”

http://japan.kantei.go.jp/97_abe/statement/201504/uscongress.html

58) 奥平康弘·山口二郎 編 (2014) 『集團の自衛権の何が問題か：解釈改憲批判』 岩波書店, p.276.

V. 결론

이상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보고서의 논의에 나타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논리를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억지력 강화를 통한 군비경쟁 저하의 논리, 변용된 평화적 생존권론, 수정주의 역사관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합법적이고 설득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용인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순적이고 수정주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었다.

즉 억지력을 통한 군비 경쟁 저하라는 논리를 살펴보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군비 증강을 통해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신냉전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평화적 생존권론은 헌법 제9조를 기저로 한 비군사적 인권으로서의 평화라는 핵심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용하여 마치 평화적 생존권론의 입장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이 필요하다는 모순적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의 수정주의 역사관은 기존의 정부 입장을 무시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게 한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논거는 논리적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60여년의 논의 축적에 근거한 기존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하고 이를 위한 안보법제 정비를 강행한 것이다.

일본 시민 사회는 이러한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일본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아베정부가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평화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반대운동 및 평화적 생존권을 기저로 한 안보법제 위한 소송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 못지않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현명한 외교적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양면성을 지닌 복잡한 난제임에 틀림없다.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대북억제력을 강화하는 오바마 정부가 적극 지지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미·일 삼각동맹 차원에서의 대북 공조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억지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기여하는 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 및

패권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동맹을 통한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이를 수 있는 평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북아 역내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본 국내 안보법안이 통과되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합법화되었으나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힘을 합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실제적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으로서의 평화,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동북아 역내 평화문화 조성을 위한 기치를 높이며 나아가갈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실제적 권리는 확보하였으나 실제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억제되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나아오는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운(2007) 「탈냉전기 중·러 협력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p.70.
- 박영준(2013) 「아베정권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정세」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p.13.
- 박한규(2014)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와 향후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137.
- 설인호 외(2012) 「중국 국방백서 분석」 『신아세아』 19권 4호, 신아시아연구소, pp.192-225.
- 정재홍(2012)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지역 안보질서 변화 고찰」 『군사논단』 70, 한국군사학회,
- 豊下 楯彦(2007) 『集團的自衛権とは何か』 岩波書店, p.5.
- 奥平康弘,山口二郎 編(2014) 『集團的自衛権の何が問題か: 解釈改憲批判』 岩波書店, p.130.
- 浅野善治 外編(2003) 『憲法答弁集(1947-1999)』 信山社, pp.85-86.
- 保阪正康(2015) 『安倍首相の歴史観を問う』 講談社, pp.17-18
- 半田滋(2014) 『日本は戦争をするのか: 集團的自衛権と自衛隊』 岩波書店, pp.59-60.
- 渡辺治 外(2014) 『大国への執念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 大月書店, pp.155-156.
- 山田邦夫(2006) 「自衛権の論点」 『憲法の論点シリーズ⑫』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p.2.
- 樋口陽一, 山口二郎 編(2015) 『安倍流改憲にNOを!』 岩波書店, pp.40-41.
- 浦部法穂(2014) 「日本国憲法平和主義の歴史的意味」 『浦部法穂の憲法時評』 法学館憲法研究所.
- 小林武編(2009) 「今日における平和的生存権の意義と可能性」 『いま日本国憲法は』 法律文化社, pp.122-127

元山健, 建石真公子 編(2009) 『現代日本の憲法』 法律文化社, pp.147-148.
水島朝穂(2015) 『徹底分析! 集団的自衛権』 岩波書店, p.36.
現代憲法教育研究会編(2010) 『憲法とそれぞれの人権』 法律文化社, p.187
星野安三郎(1962) 「平和的生存権序論」 『日本国憲法史考』 法律文化社, pp.5-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P.4-16.
Ross Robert,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Foreign Affairs, November 91(6), pp.70-82.
第186回国会答弁書 答弁書 第六七号.
第165回国会第3号 「安倍内閣総理大臣の所信についての演説」
第19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第57号.
第132回 国会(本会議)会衆議院会議録第35号.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2008)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2014)
「日本国憲法に関する調査報告書」(2005) 参議院憲法調査会 p.69.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계재확정일 : 2015.10. 3